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608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강인구

피고A

변론 종결2020. 12. 9.

판결 선고2021.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C생)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809,6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297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9,436원과 그 중 71,767,03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2017. 5.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나. E이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 B, F, G, H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와 자녀 B, F, G, H는 2017. 2. 22. 망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피고 앞으로 2017.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금천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에 대한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 E을 부양하고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였고, B는 생전에 망 E으로부터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증여받아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B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신향

별지